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 재정준칙 도입〉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29호)

〈재정준칙 도입〉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박덕흠의원안	1
2. 박대출의원안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박덕흠의원안	1
2. 박대출의원안	3
III . 검토의견	6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등(박덕흠의원안)	6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6
나.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16
2. 재정준칙 도입 등(박덕흠·박대출의원안)	19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19
나. 재정준칙 도입 관련 논의경과	27
다. 개정안 간 비교	30
라. 조문별 검토	33
1)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박덕흠·박대출의원안 제86조의2 신설) ...	33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 (박대출의원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박덕흠·박대출의원안 제86조 의3 신설)	43
3)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마련 (박대출의원안 제87조제1항)	48
4)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 (박대출의원안 제90조제4항)	52
5) 재정준칙 등의 도입 시기 (박덕흠·박대출의원안 부칙)	56

[참 고]	58
-------------	----

I. 제안경위

1. 박덕흠의원안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7.

2. 박대출의원안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8. 14.

다. 회 부 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덕흠의원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2. 박대출의원안

(1)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쟁국 대비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일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안 제86조의2 신설)

- 1) 정부가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Delta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Delta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안 제86조의3 신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전액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기존 법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바, 이를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확충 방안 등으로 구체화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Ⅲ.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등(박덕흠의원안)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 SOC 및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 그 외 사업: 현행과 같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³⁾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개정안은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하여 2023년의 경우 명목GDP는 591조원에서 2,236조원으로 약 3.8배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규모(본예산 총지출 기준)도 145조원에서 639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으며,⁴⁾ 물가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1999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1.8배 상승하였음.⁵⁾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국가통계포털(KOSIS), 기획재정부, 2024. 7.

5)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1.76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를 기록함(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GDP(명목)·총지출 비교 >

(단위: 조원)

구분	1999년	2023년	비고
GDP(명목)	591	2,236	약 3.8배 증가
총지출 (본예산 기준)	145	639	약 4.4배 증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2015년기준), 기획재정부, 2024. 10.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의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SOC 및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품질저하 또는 기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16.7개월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인 9개월⁶⁾을 7개월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조사기간 >

(단위: 건, 개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조사완료 사업수	18	34	13	28	10	20.6
조사기간	14.1	19.3	16.2	16.3	14.3	16.7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반면, 물가상승이나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는 2023년 총 28건으로,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면제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OC 및 R&D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5년간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단위: 건, 조원)

구분	실시 건수				실시 규모			
	전체	SOC	R&D	기타	전체	SOC	R&D	기타
2019	71	24 (33.8)	31 (43.7)	16 (22.5)	63.6	30.6 (48.1)	27.6 (43.3)	5.4 (8.5)
2020	52	10 (19.2)	37 (71.2)	5 (9.6)	31.4	5 (15.9)	25.5 (81.2)	1 (3.2)
2021	60	21 (35.0)	23 (38.3)	16 (26.7)	74.9	26.9 (35.9)	20.5 (27.3)	27.6 (3.7)
2022	42	14 (33.3)	16 (38.1)	12 (28.6)	30.8	12.8 (41.6)	9.1 (29.5)	8.9 (2.9)
2023	42	22 (52.4)	12 (28.6)	8 (19.0)	41.8	31.6 (75.6)	7.9 (18.9)	2.3 (5.5)

자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8.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의 추세를 반영하여 SOC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음.⁷⁾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기재위에서 경제·재정규모 확대, 사업규모화·융복합화 추세 등을 종합고려하여 SOC·R&D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변경키로 한 만큼 그 논의·심사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⁸⁾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2024. 9. 30.기준)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4.12.)

8) 정부는 2024년 5월 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 추진을 발표하였고,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1천억원 이상 R&D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 맞춤형 심사제도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별도 보완절차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관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기준)

구분	내용
정성호의원안 (제2200008호)	- SOC, R&D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 그 외 사업: 현행과 같음
박덕흠의원안 (제2200829호)	
최수진의원안 (제2200269호)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원택의원안 (제2204236호)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다음----- -----대규모 신규사업----- ----- ----- ----- ----- ----- ----- ----- ----- -----<단서 삭제>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도시철도</u> 라. 「<u>항만법</u>」 제2조제5호에 <u>따른 항만시설</u> 마. 「<u>공항시설법</u>」 제2조제7호 <u>에 따른 공항시설</u> 바.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u> <u>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호에 따른 댐</u> 사. 「<u>수도법</u>」 제3조제5호에 <u>따른 수도</u> 아. 「<u>하천법</u>」 제2조제3호 가 <u>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u> <u>설</u>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u>도로·철도·도시철도·항</u> <u>만시설·공항시설·댐·수</u> <u>도·하천시설 및 관련 시설</u> <u>로 인정하는 사업</u>
2.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제14조	2. 「 <u>과학기술기본법</u> 」 제11조에
<u>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u>	<u>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u>
	<u>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u>
	<u>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u>
	<u>원 이상인 사업</u>
3. 「 <u>과학기술기본법</u> 」 제11조에	3. <u>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u>
<u>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u>	<u>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u>
	<u>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u>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u>사업</u> ② ~ ⑥ (생략)	<u>업</u> <u>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u> <u>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u> 4. -----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현 행	개 정 안
	부 칙 ○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 ○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적용례(제3조):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조사함.⁹⁾

9)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개정안 부칙 제3조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500억/300억)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늘어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500억/300억)을 초과한 사업 중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1,000억/500억)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의 상향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개정규정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재정준칙 도입 등(박덕흠·박대출의원안)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여러 사항이 규정하고 있음. 제86조¹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0조¹¹⁾에서는 예산총칙에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채무의 총량을 관리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제87조제1항¹²⁾에서는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 등에 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0조제4항¹³⁾에서는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10) 「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출연 후 남은 세계잉여금은 30% 이상을 국가채무 등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91조¹⁴⁾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발행·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채무 현황 및 중기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국가채무 관리 및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관리체계 하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2023년 기준¹⁵⁾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¹⁶⁾)의 GDP 대비 비율은 55.2%로, 미국(122.1%), 영국(101.1%), 독일(64.3%) 및 선진국 평균(111.0%)보다 낮은 수준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대응 등으로 본예산은 2020년 512조, 2021년 558조, 2022년 608조원, 2023년 639조원, 2024년

-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14)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15) 국가부채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최신의 통계로 2024년 4월 IMF Fiscal Monitor에서 발표함. [참고1] 참조.
 - 16) 정부부채의 범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를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및 OECD 등에서 정부부채를 국제 비교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D2)의 개념을 사용함.

657조원이 편성되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 및 2022년도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고, 2017년 △1.0%, 2018년 △0.5% 수준이었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2023년 △3.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¹⁷⁾ 또한 2019년까지 40% 미만 수준에서 관리되던 것이 2024년에는 47.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채무 등(D1, D2, D3)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2015	591.5	34.0	676.2	38.8	1,003.5	57.6
2016	626.9	34.2	717.5	39.1	1,036.6	56.5
2017	660.2	34.1	735.2	38.0	1,044.6	54.0
2018	680.5	33.9	759.7	37.9	1,078.0	53.7
2019	723.2	35.4	810.7	39.7	1,132.6	55.5
2020	846.6	41.1	945.1	45.9	1,280.0	62.2
2021	970.7	43.7	1,066.2	48.0	1,427.3	64.2
2022	1,067.4	45.9	1,157.2	49.8	1,588.7	68.4
2023	1,126.8	46.9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 2023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024년 12월)
 자료: 기획재정부

17) 여기에서 쓰이는 국가채무 비율은 앞서 살펴본 D1, D2, D3 중 D1의 개념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관리재정수지 비율	△1.0	△0.5	△2.7	△5.4	△4.1	△5.0	△3.6	△3.6
통합재정수지 비율	1.2	1.6	△0.6	△3.5	△1.4	△2.8	△1.5	△1.8
국가채무비율	34.1	33.9	35.4	41.1	43.7	45.9	46.9	47.4

* 예산 기준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자료 : 기획재정부

이에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 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되어 참고자료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을 뿐이며, 다른 규정들도 엄격한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지니지 않고 별다른 이행 강제 수단이나 제재 수단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준칙이란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¹⁸⁾ 있는 수량의 제한’을 의미

18) IMF(2017) : “재정목표가 법제화된 경우뿐 아니라 법령 형태가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이행이 의무화되었으면 재정준칙으로 간주”

하는데, 목표지표에 따라 채무준칙·수지준칙·지출준칙·수입준칙¹⁹⁾으로 분류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를 바탕으로 한 수지준칙을 도입하되 채무지표를 보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재정준칙을 법령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동안 정부는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규율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재정준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음.

둘째,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

IMF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최소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채택한 국가가 약 105개국에 달하며²⁰⁾ 수지준칙(93개국)과 채무준칙(8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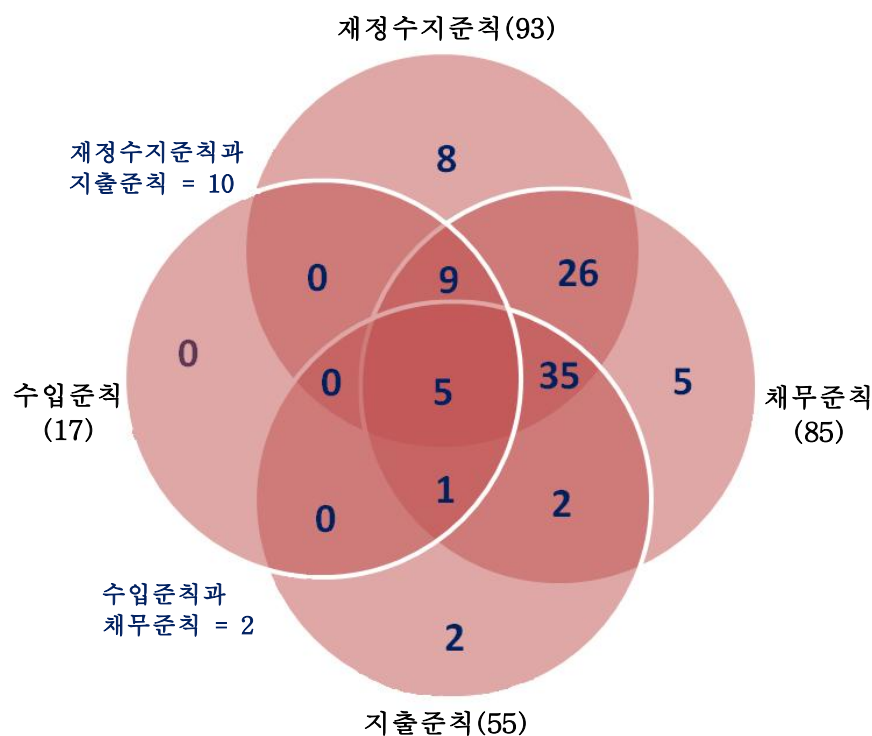
19) <재정준칙의 분류>

유 형	주요내용	주요 운용국
채무준칙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한도를 제시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약조건을 가하는 방식	영국, 호주, 핀란드
수지준칙	매 회계연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출준칙	총지출 한도,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지출 규모나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미국, 스웨덴
수입준칙	재정수입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설정하거나, 특정 수입에 대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프랑스, 네덜란드

20) IMF,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국)을 보편적으로 활용 중임.

[재정준칙 도입의 보편화(2021년 말 기준)]



자료 : IMF Fiscal Rules Dataset: 1985 - 2021; Davoodi, Elger, Fotiou, Garcia-Macia, Lagerborg, Lam and Pillai (2022a).

특히 2000년대 말 이후로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도 재정준칙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²¹⁾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준칙 도입 경험이 없음.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2022. 1., p. 6.

21) IMF,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2022. 1., p. 6.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

구 분	준칙내용	도입시기	법적기반
EU	▪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유지 ▪ GDP 대비 부채비율 60% 이내 유지	1992년	안전성협약
	▪ 일부 회원국 대상 지출준칙* 적용 및 재정준칙 적용 완화 * 재정적자 △3% 미만 달성·유지 등	2012년	新재정협약
미국	▪ 재량지출 상한 설정 ▪ 의무지출·세입감소 입법시 PAYGO 원칙	1990년	법률
	▪ PAYGO 원칙 재도입 ▪ 법률에 의해 채무한도 통제	2010년	법률
영국	▪ 자본지출에 한하여 차입 허용 (Golden rule) ▪ 공공부문 순채무 안정적 수준(40%) 유지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적용중단	1998년	내부규칙
	▪ 5년 중기계획의 5년차에 순차입 △3% 이내 ▪ 5년 중기계획의 5년차까지 순채무 비율 감소	2022년	법률
독일	▪ 원칙적으로 수입과 지출 균형 (신규 채무규모 GDP 대비 0.35% 이내 제한) * 연방정부 2016년, 지방정부 2020년부터 적용	2009년	기본법 (헌법)
스웨덴	▪ 총지출 및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1997년	중기계획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1% 흑자 * 재정위원회 설치	2007년	법률
일본	▪ 경상지출의 국내 수입 초과 금지²²⁾ ▪ 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²³⁾	1947년 1998년	법률
	▪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 목표 등	2006년	중기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또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국가별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 IMF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한 국가는 190개 회원국 중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0여 개국에서 재정준칙이 재정책임이나 예산체계 관련 법률(아르메니아, 자메이카, 파라과이) 혹은 헌법을 통해(브라질, 덴마크) 규정돼 있고, 홍근석·김성

22) 1975년부터 정부는 동 준칙의 적용 배제 요청

23)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1년여 만에 폐지

찬(2017)에 따르면 각국의 종류별 재정준칙 159개 중 103개가 성문화된 법률의 형태이며 법률보다 강화된 형태인 헌법에 규정된 재정준칙도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국가의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구 분	지출준칙	수입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계
헌법	4	1	11	3	19
국제조약	0	0	0	0	0
법률	29	2	52	32	115
연정합의	4	2	4	4	14
정치적 협약	5	4	6	8	23
계	42	9	73	47	

자료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22.1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음.

IMF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

조향을 발동하거나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각자의 재정준칙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²⁴⁾²⁵⁾.

둘째, 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음.

나. 재정준칙 도입 관련 논의경과

그동안 법률에 재정준칙을 규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되어 왔는데, 한 가지는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안과 같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식임.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그 방식 및 수준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하나, 다만 「재정건전화법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담겨 있지 않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까지

24) IMF,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2022.1, p. 13.

25)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 등을 중단했던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재개하였음.

국 가	경 과
EU	▶ '20.3월 재정준칙 일반면제조항 적용 ▶ '23년 말 면제조항 적용 중단 결정
영국	▶ '20.3월 재정준칙 면제 ▶ '22, '23년 두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재도입
독일	▶ '20~'22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준칙 면제, '23년 러-우 전쟁, 에너지 가격 위기 등 이유로 면제 ▶ '24년부터 준칙 재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름.

재정준칙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안」 3건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각각 제출·발의되었으나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및 그 수준과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0대 국회 심사경과]

안건명	대표발의	재정준칙 내용	심사경과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974)	정부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3%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17.1.16.)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7.1.17.) ○ 임기만료 폐기(2020.5.29.)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4378)	송영길 의원	신규 국가채무 전년도 GDP의 0.35% 이내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17.1.16.) ○ 제348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7.1.17.) ○ 임기만료 폐기(202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88)	백재현 의원	국채 발행 및 차입금 순증 규모 GDP 0.35% 이내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2017.11.10.) ○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9.11.21.) ○ 임기만료 폐기(202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426)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2%	○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18.9.19.) ○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9.11.21.) ○ 임기만료 폐기(2020.5.29.)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0593)	송언석 의원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2%	○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019.7.12.) ○ 임기만료 폐기(202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3260)	박명재 의원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	○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11.12.) ○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2019.11.21.) ○ 임기만료 폐기(2020.5.29.)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안」 2건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각각 발의·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공청회를 거친 바 있으나, 재정준칙 도입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안건명	대표 발의	재정준칙 내용	심사경과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96)	류성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2%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상정(2020.9.21.)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0.11.11.)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0.11.16.) ○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11.23.)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1270)	송언석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9)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94)	윤희숙 의원	균형재정 원칙 (단 국가채무비율 0.5% 허용)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상정(2020.9.21.) ○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1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025)	정부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 기준을 상호 보완 적용 <계산식> $\left(\frac{\text{국가채무 비율}}{60\%}\right) \times \left(\frac{\text{통합재정수지 비율}}{\Delta 3\%}\right) \leq 1.0$	○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21.2.16.) ○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1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28)	박대출 의원	관리재정수지 △3%, 다만, 국가채무비율 60%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2%	○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상정(2022.12.1.) ○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2.15.) ○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3.15.) ○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6.27.)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5.4%에서 2023년에는 46.9%에 이르는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국가채무의 급증이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과 대전환 시기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 시기에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적다는 의견임.

다. 개정안 간 비교

[박덕흠·박대출 의원안 간 비교]

구 분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재정준칙 수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다만,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	- 기재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검토	- 기재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검토 후 <u>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u>
준칙적용 예외	-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재정여건에 중대한 변화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것 외에는 추경 편성요건과 동일	

구 분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조치	-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 시 조치	-	-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세계잉여금 을 활용한 채무 상환	-	-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자기금 출연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비율을 50%(현행 30%)로 <u>상향</u>

박덕흠의원안과 박대출의원안은 동일한 재정준칙 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다만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 이하)과 준칙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첫째, 박덕흠·박대출의원안은 모두 기재부장관이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대출의원안은 추가로 기재부장관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음.

둘째, 박덕흠·박대출의원안은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가 발생하여 준칙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재정건전화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

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박대출의원안은 추가로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자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실효성 확보 수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셋째, 그 외에 추가로 박대출의원안은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 확대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박대출의원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428) 내용에서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내용(‘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세계잉여금의 국채 상환 확대 등 재정준칙 실효성 확보 수단’,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 결과의 국회 보고 절차’)²⁶⁾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²⁷⁾.

26)

구 분	심사 내용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조치	- 재정건전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	- 국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재부장관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27) 제21대 국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428)은 기존 재정준칙 논의내용과 정부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해당 안 상정(2022.12.1.) 이후 동 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심사를 진행하였음.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 심사 결과, 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재정준칙 실효성 확보 수단,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결과에의 국회 보고 등)에 대한 위원들 간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였으나,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및 시의적절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음.

라. 조문별 검토

1)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박덕흠·박대출의원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u><신설></u>	○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86의2 신설) - [수지준칙 도입] 예산안·추경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산안·추경안의 해당 회계연도 GDP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해야함 (제1항)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수지 - [채무지표 활용]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가채무+지방채무가 직전 회계연도 GDP 100분의 60 초과했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100분의2 이내로 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야 함 (제2항)	
	- [적정성 검토] 기재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할 수 있음 (제3항)	- [적정성 검토] 기재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제3항)

가) 개정안의 개요

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²⁸⁾의 가지조문으로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29)과 두 개정안을 비교하면, ① 재정건전화법안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개정안들은 수지준칙을 채택하되 채무지표를 보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②

28) 「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재정건전화법안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개정안들은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가로 박대출의원안은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안의 비교]

구 분	박덕흠·박대출의원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안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채무 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45% 이하 유지
재정수지	다만,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준칙적용 예외	-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재정여건에 중대한 변화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것 외에는 추경 편성요건과 동일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조치	-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박덕흠·박대출의원안) -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 (박대출의원안)	-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

나) 재정준칙 수준 검토

개정안들은 예산안 등 편성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GDP의 3% 이내가 되도록 할 것을 준칙으로 삼되, 국가채무비율이 직전회계연도 GDP의 60%를 초과했거나 다음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GDP의 2% 이내가 되도록 규정함.

두 개정안의 이와 같은 기준은 해외 상당수의 국가가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수준으로,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3% 수준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국가채무준칙 적용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상한 기준]

기준	국가명
80%	모리셔스
70%	카메룬, 세네갈, 말리
60%	EU 회원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55%	슬로바키아
50%	헝가리
45%	세르비아
40%	탄자니아, 안도라, 몽골
35%	나미비아

자료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 2022.1.

[재정수지준칙 적용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상한 기준]

기준	국가명
△3.5%	몰디브, 그레나다
△3%	EU 회원국, 세네갈, 인도, 인도네시아
△2%	코소보, 몽골
△1%	페루, 칠레
△0.5%	그리스, 벨기에, 라트비아
△0.35%	독일
0%	스위스, 홍콩
1%	호주, 스웨덴

자료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 2022.1.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법률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준칙 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두 개정안이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으로 삼은 것은 복지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흑자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부채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국가채무인 D1²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임.

개정안들은 해외 상당수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60%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의 채무준칙 60%는 D1 기준이 아니고 D2³⁰⁾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채무의 국제적 기준은 IMF와 OECD에서 규정한 D2 기준인데, 현행 법률 및 개정안과 같이 D1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계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의 채무를 과소평가하는 문

2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채무

30)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

제가 있음. 실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D1 비율은 45.9%인데 반해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산한 D2 비율은 49.8%임³¹⁾.

다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예산이 현금주의로 편성되므로 발생주의 기준인 D2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D2에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데 해당 기관들에 정부를 구속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심사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³²⁾.

둘째, 개정안들의 재정준칙 기준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수준의 기준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들의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과거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2020~2024년은 재정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나 2019년 이전에는 대부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임.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관리재정수지비율은 $\Delta 2.9\%$ 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전망됨.

31)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기준 68.4%임.

32) 참고로 지난 제21대국회 재정준칙 관련 법안 심사시에도 정부부채의 범위를 D1으로 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의견을 고려하여 D1을 기준으로 하는 안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였음.

[연도별 재정준칙 한도 준수여부]

	'11	'12	'13	'14	'15	'16	'17	'18
D1 비율(GDP%)	29.0	29.5	31.2	32.5	34.0	34.2	34.1	33.9
전년대비증가율(%)		0.5	1.7	1.3	1.5	0.2	△0.1	△0.2
D2 비율(GDP%)	31.7	33.5	36.0	37.9	38.8	39.1	38.0	37.9
관리수지(GDP%)	△0.9	△1.2	△1.3	△1.8	△2.2	△1.2	△1.0	△0.5
준칙준수여부	○	○	○	○	○	○	○	○

	'19	'20	'21	'22	'23	'24(예산)	'25(예산안)
D1 비율(GDP%)	35.4	41.1	43.7	45.9	46.9	47.4	48.3
전년대비증가율(%)	1.5	5.7	2.6	2.2	1.0	0.5	0.9
D2 비율(GDP%)	39.7	45.9	48.0	49.8			
관리수지(GDP%)	△2.7	△5.4	△4.1	△5.0	△3.6	△3.6	△2.9
준칙준수여부	○	X	X	X	X	X	○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 2023년 D2, D3 비율은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024년 12월)

개정안은 재정준칙 수준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비율 △3%로 설정했으나,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 공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GDP 성장률(경상)은 약 4%³³⁾임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수렴시킬 수 있는 재정수지비율은 △3%가 아닌 △2.3%인 것으로 분석됨.

경상성장률이 4%임에도 개정안에 따라 재정수지비율을 △3%로 유지할 경우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은 78%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재정준칙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3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
경상GDP 성장률	4.3	6.2	5.3	5.5	3.8	1.7	0.9	7.9	4.6	3.3	4.3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 공식]

$$\text{국가채무비율} = \text{재정적자비율} \times \frac{1 + \text{경상성장률}}{\text{경상성장률}}$$

재정수지비율 경상성장률	△2%	△2.5%	△3%
2.0%	102.0%	127.5%	153.0%
2.5%	82.0%	102.5%	123.0%
3.0%	68.7%	85.8%	103.0%
3.6%	57.6%	71.9%	86.3%
4.0%	52.0%	65.0%	78.0%
5.0%	42.0%	52.5%	63.0%

-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관련 → 경상성장률 5%일 때 국가채무비율 60% 유지 위한 재정수지는 약 △3%

$$\text{국가채무비율}(60\%) \times \frac{\text{경상성장률}(5\%)}{1+\text{경상성장률}(5\%)} = 60\% \times \frac{0.05}{1.05} \approx 3\%$$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기획재정부는 주요국 재정준칙 운용사례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시 개정안의 재정준칙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며, 개정안의 재정준칙 수준이 장기균형 국가채무비율 공식에 부합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비율을 △2%로 관리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심사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³⁴⁾.

셋째, 향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성숙해질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관리재정수지보다 통합재정수지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적자전환 시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가 각각 2031년과 2043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³⁵⁾되는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향후에도 재정준칙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준 수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대출의원안은 추가로 기재부장관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정준칙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토 결과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박대출의원안과 같이 국회 보고절차를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³⁶⁾.

34) 참고로 지난 제21대국회 재정준칙 관련 법안 심사시에도 개정안과 같은 재정준칙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은 재정준칙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안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였음.

35)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 8. pp. 72-7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신 설>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 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 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 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 정수지(이하 “관리재정수지” 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 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2. 국민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 금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 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 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 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 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 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 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 정수지(이하 “관리재정수지” 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 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2. 국민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 금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 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 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 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36) 제21대 국회 재정준칙 관련 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시에도 재정준칙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현 행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u>성하여야 한다.</u> 1. 제91조의 국가채무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나.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채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본 조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u>성하여야 한다.</u> 1. 제91조의 국가채무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나.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채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박대출의원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박덕흠·박대출안 제86조의3 신설)

현 행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신 설>	-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사항 (§7②) -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초과 시 재정건전화대책 (§86의3)
<신 설>	○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86의3 신설) - 정부는 예산안·추경안 편성 시 추경편성의 주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GDP 대비 100분의3 또는 100분의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재부장관은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지방교부세(금) 정산 및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

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편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³⁷⁾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재정

37)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준칙을 벗어난 예산안 등을 편성하는 경우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박대출의원안은 재정준칙을 벗어난 예산안 등을 편성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발생 시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어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근 10회계연도(2015~2024년) 중 최근 2년(2023·2024년)을 제외한 8회계연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된 사유 발생시 재정준칙을 배제하게 되면, 재정준칙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개정안은 미적용

둘째, 두 개정안은 재정준칙을 벗어난 예산안 등을 편성하는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만으로는 재정건전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박대출의원안처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⁸⁾.

38) 제21대 국회 재정준칙 관련 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시에도 재정준칙 허용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대책 마련 외에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방안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8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제90조제4항 각 호의 채무를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현행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u>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③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u>	<u>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u> ② <u>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③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u>

3)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마련 (박대출의원안 제87조제1항)

현행	박대출의원안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87) -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 →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첨부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87) -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 법률 시행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u>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해</u> 첨부

박대출의원안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해 그 법률안에 첨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재정지출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시부터 재정건전화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정부가 제출하는 재원조달방안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³⁹⁾이 있음.

일례로, 202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총 2,025억원, 국가부담 1,0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으로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인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으로만 적시하고 있음.

국회의원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해 첨부하도록 규율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음.

이에 박대출의원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율해 위에서 언급한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재원조달방안’의 내용을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정 법률에 의해 정부지출이 증가하거나 세입이 감소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규모만

39) 한국의회학회, 『재정수반 법률안의 심사체계 강화 방안 : 페이고(Pay-Go) 제도를 중심으로』, 2016.12.

큼 다른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입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난 제21대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 25,858건 중 정부제출 법안은 3% 수준인 831건에 불과하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가적 관점에서 법률안 개정에 따른 지출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29)은 「국가재정법」에 정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원조달방안 규정을 이관하면서 동 규정을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특별위 발의 의안에도 적용하는 한편,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뿐 아니라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자 하므로⁴⁰⁾ 향후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40)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용할 때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재정법」이 아닌 「국회법」에 규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박대출의원안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u>재원조달방안을</u>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 <u>제출하려는 경우</u> ----- ----- ----- ----- <u>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u>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 (박대출의원안 제90조제4항)

현행	박대출의원안
○ 세계잉여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 ① 교부세·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세계잉여금-①)의 30% 이상 ③ 국가채무 상환 : (세계잉여금-①-②)의 30% 이상 ④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⑤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 세계잉여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 ① 교부세·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세계잉여금-①)의 30% 이상 ③ 국가채무 상환 : (세계잉여금-①-②)의 50% 이상 ④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⑤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박대출의원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90조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그 외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¹⁾.

4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생략)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11	51,285	19,587	9,509	6,657	-	15,532
2012	8,533	1,886	1,994	1,396	3,257	-
2013	812	-	244	171	-	398
2014	964	-	289	203	472	-
2015	25,277	-	7,583	5,308	12,386	-
2016	60,920	38,091	6,849	4,794	11,186	-
2017	100,422	59,762	12,198	8,539	19,923	-
2018	106,575	105,292	385	269	629	-
2019	619	619	-	-	-	-
2020	57,192	22,653	10,362	7,253	16,924	-
2021	179,949	113,382	19,970	13,979	32,618	-
2022	60,248	4,103	16,843	11,791	-	27,511
2023	364	364	-	-	-	-
합계	653,160	365,739	86,226	60,360	97,395	43,441

※ 자료: 기획재정부

박대출의원안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 상환 규모가 20%p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 ⑦ (생략)
-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경우 세계잉여금 처리 시나리오]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원	채무상환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11	51,285	19,587	9,509	11,095	-	11,094
2012	8,533	1,886	1,994	2,327	2,326	-
2013	812	-	244	284	-	284
2014	964	-	289	338	337	-
2015	25,277	-	7,583	8,847	8,847	-
2016	60,920	38,091	6,849	7,990	7,990	-
2017	100,422	59,762	12,198	14,231	14,231	-
2018	106,575	105,292	385	449	449	-
2019	619	619	-	-	-	-
2020	57,192	22,653	10,362	12,089	12,088	-
2021	179,949	113,382	19,970	23,299	23,298	-
2022	60,248	4,103	16,843	19,651	-	19,651
2023	364	364	-	-	-	-
합계	653,160	365,739	86,226	100,600	69,566	31,029

※ 주 : 각 연도별 '추경재원'은 실제 추경이 편성된 연도에 대해서만 계상함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토대로 재구성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2011년 이후 채무상환 실적에 적용해보면 실제 채무상환액 합계인 6조 360억원 대비 4조 9,760억원이 증가(82.44% 증)한 10조 60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추경재원은 산식에 따른 경우 2조 7,829억 감소한 6조 9,566억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박대출의원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 계획) ① ~ ③ (생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 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 ----- ----- 50 ----- ----- -----.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1. ~ 4. (현행과 같음)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5) 재정준칙 등의 도입 시기 (박덕흠·박대출의원안 부칙)

박덕흠의원안	박대출의원안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등(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적용 ○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안 제87조제1항)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안 제90조제4항)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박덕흠의원안은 재정준칙 등의 도입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박대출의원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준칙 등을 어느 시점에 도입할지 여부는 재정준칙의 빠른 도입을 통하여 사전에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원활한 제도 실시를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박덕흠의원안은 재정준칙 등을 공포 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데, 시행시기에 따라 예산안 편성일정상 즉시 도입이 어렵거나 도입 대상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로, 박대출의원안처럼 구체적인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건전화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29)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한편, 재정준칙 등에 대해서는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참고1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IMF Fiscal Monitor]

(단위: GDP대비, %)

구분	일반정부 부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안도라	39.8	37.9	36.3	35.4	46.4	48.6	38.9	36.4
호주	40.6	41.2	41.7	46.7	57	55.5	50.1	49.4
오스트리아	82.5	78.6	74.1	70.6	83	82.5	78.4	75.5
벨기에	105.0	102.0	99.9	97.6	111.8	108	104.3	104.5
캐나다	92.4	90.9	90.8	90.2	118.2	113.5	107.4	107.1
크로아티아	79.5	76.3	73.1	70.9	86.8	78.1	68.2	63.5
키프로스	102.6	92.6	101.1	93	114.9	99.3	85.6	77.4
체코	36.6	34.2	32.1	30.0	37.7	42.0	44.2	44.2
덴마크	37.2	35.9	34.0	33.7	42.3	36.0	29.8	30.4
에스토니아	10.0	9.1	8.2	8.5	18.6	17.8	18.5	20.7
핀란드	68.0	66.0	64.8	64.9	74.7	72.6	73.5	76.7
프랑스	98.0	98.1	97.8	97.4	114.7	113.0	111.8	110.6
독일	69.0	65.2	61.9	59.6	68.8	69.0	66.1	64.3
그리스	183.7	183.2	190.7	185.5	213.2	201.1	179.5	168.8
홍콩	0.1	0.1	0.1	0.3	1.0	1.9	4.3	6.5
아이슬란드	82.5	71.7	63.2	66.5	77.5	74.8	67.4	64.8
아일랜드	74.4	67.4	62.9	57.1	58.1	54.4	44.4	43.3
이스라엘	61.8	59.8	60.1	59.2	70.9	67.8	60.5	61.9
이탈리아	134.8	134.2	134.5	134.2	154.9	147.1	140.5	137.3
일본	232.4	231.3	232.4	236.4	258.3	253.9	257.2	252.4
한국	41.2	40.1	40.0	42.1	48.7	51.3	53.8	55.2
라트비아	40.4	39.0	37.0	36.7	42.2	44	41.5	43.5
리투아니아	39.9	39.3	33.7	35.8	46.2	43.4	37.8	35.6
룩셈부르크	19.6	21.8	20.9	22.4	24.6	24.5	24.7	25.7
몰타	54.7	47.8	43.4	40.0	52.2	53.9	51.6	51.8
네덜란드	61.9	57.0	52.4	48.5	54.7	51.6	50.1	47.2
뉴질랜드	33.4	31.1	28.1	31.8	43.3	47.5	47.2	45.9
노르웨이	37.9	38.3	39.4	40.6	46.1	41.7	36.3	41.8
포르투갈	131.5	126.1	121.5	116.6	134.9	124.5	112.4	99.0
싱가포르	106.5	107.8	109.4	127.8	148.1	142.9	158.2	162.1
슬로바키아	52.3	51.5	49.4	48.0	58.9	61.1	57.8	57.9
슬로베니아	78.5	74.2	70.3	65.4	79.6	74.4	72.3	68.5
스페인	102.7	101.8	100.4	98.2	120.3	116.8	111.6	107.5
스웨덴	42.3	40.7	39.2	35.6	39.9	36.5	32.9	35.9
스위스	40.9	41.8	39.8	39.6	43.2	41.1	37.6	38.3
영국	87.8	86.7	86.3	85.7	105.8	105.2	100.4	101.1
미국	106.6	105.5	106.8	108.1	132	125	120	122.1

* 출처: IMF Fiscal Monitor('24.4월)

※ 위 자료는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수치가 반영되기 전의 자료로 본문상 일반정부 부채(D2) 수치와 차이가 있음.

참고2

국가별 주요 재정준칙 운용 사례 [IMF, 2022년]

국가명	주요 준칙 내용	시행시기
〈OECD 회원국〉		
호주	(수지) 예산 흑자 $\geq$ GDP 1% (수입) 세수비율 $\leq$ GDP 23.9%	1998
오스트리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45%	1999
벨기에	(수지) 구조적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0.5% 한도 내에서 설정	2014
칠레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1%	2009
콜롬비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1%	2011
코스타리카	(수지) 신규차입 규모 $\leq$ 공공투자 규모	2001
체코	(채무) 일반정부 채무 $\leq$ GDP 60%	2017
덴마크	(지출) 지출증가율 $\leq$ 잠재GDP성장률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4
에스토니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4
핀란드	(수지) 재정적자 $\leq$ GDP 1%	2011
프랑스	(지출) 지출 증가율 한도(이자·연금지출 제외) (수지) 중기예산법안에 구조적 수지목표 설정	98/12
독일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35%	2009
그리스	(수지) 재정적자 $\leq$ GDP 0.5%	2014
헝가리	(채무) 정부채무 $\leq$ GDP 50%	2016
아이슬란드	(수지) 재정적자 $\leq$ GDP 2.5% (채무) 일반정부 순채무 $\leq$ GDP 30%	2016
아일랜드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2
이스라엘	(지출) 실질지출증가율 $\leq$ 3년평균 인구증가율 + 50/국가채무비율	2014
이탈리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2014
일본	(수지)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2018
라트비아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leq$ GDP 0.5% (채무) 공공채무 $\leq$ GDP 60%	2013
리투아니아	(지출) 예산, 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지출 $\leq$ 잠재GDP성장률의 0.5%	2015
룩셈부르크	(채무) 일반정부채무 $\leq$ GDP 60%	2004
멕시코	(지출) 구조적 경상지출의 실질 증가율 $\leq$ 2%	2014
네덜란드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수준 $\leq$ GDP 1.0%	2011
뉴질랜드	(수지) 채무가 신중한 수준(prudent levels)에 이를 때까지 흑자 운영	1994
노르웨이	(수지) 중앙정부 재정적자(석유 부문 제외) $\leq$ 3%(연금펀드 장기기대수익률)	2017
폴란드	(지출) 재정지출·신규 지출 실질증가율 $\leq$ 1.0% (채무) 일반정부채무 $\leq$ GDP 60%	15/14
포르투갈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leq$ 중기목표(MTO)	2015
슬로바키아	(채무) 공공채무 $\leq$ GDP 55%	2012
슬로베니아	(수지) 구조적재정수지 준칙과 자동시정 메커니즘 채택	2015
스페인	(지출) 명목 지출증가율 $\leq$ 스페인 명목 중기 GDP 성장률(이자지출, 실업급여 제외)	2011
스웨덴	(수지) 재정수지 흑자 GDP 1%	2000
스위스	(수지) 구조적 예산 균형	2003
영국	(수지) 5년 단위 중기계획의 3년차 연도에 균형 (채무) 순채무 비율 5개년도 종료시까지 감소	2021
미국	(지출) 2012~30년 기간 동안 의무지출 한도 명시	2010
캐나다	(수지) 1998~2005년간 재정수지 균형	1998
〈非 OECD 회원국〉		
안도라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leq$ GDP 1.0% (채무) 중앙정부채무 $\leq$ GDP 40%	2014
앤티가 바부다	(수입) GDP 대비 세수 $\geq$ 18% (채무) 공공채무 $\leq$ GDP 70%	2021
아르헨티나	(지출) 기초재정지출증가율 $\leq$ 명목 GDP 증가율, 기초경상지출 증가율 $\leq$ CPI	2018
아르메니아	(수지) 재정적자 $\leq$ GDP 7.5% (채무) 중앙정부채무 $\leq$ GDP 60%	02/08
아제르바이잔	(수지) 석유수입 제외 GDP 대비 석유수입 제외수지가 전년대비 개선	2019
바하마제도	(채무) 2030/31까지 채무 $\leq$ GDP 50%	2018
베네투	(수지) 재정적자 $\leq$ GDP 3% (채무) 공공채무 $\leq$ GDP 70%	2015
보츠와나	(채무) 대내외 채무한도 각각 GDP 20%(총 40%)	2005
브라질	(수지) 신규차입 규모 $\leq$ 공공투자 규모	1998
불가리아	(지출) 지출한도 $\leq$ GDP 40% (채무) 미지급정부채무 $\leq$ GDP 60%	12/03
부키나파소	(수지) 재정적자 $\leq$ GDP 3% (채무) 공공채무 $\leq$ GDP 70%	2015
부룬디	(채무) 공공채무 $\leq$ GDP 50.0%	2013
카보 베르데	(수지) 차입 상한 $\leq$ GDP 3% (채무) 국가채무 $\leq$ GDP 60%	1998
캄보디아	(채무) 공공채무 $\leq$ GDP 55%	2018

국가명	주요 준칙 내용	시행시기
카메룬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채무) 공공채무 ≤ GDP 70%	17/0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2017
차드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2017
콩고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채무) 공공채무 ≤ GDP 70%	17/02
코트디부아르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크로아티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지출) 수지균형시까지 연간 GDP 1% 지출 삭감	2012
키프로스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0.5%	2014
도미니카	(수지) 2026년까지 GDP 2% 흑자 (채무) 2035년까지 GDP의 60% 달성	2021
에콰도르	(수지) 균형예산 달성 시까지 매년 비석유 부문 적자 0.2% 감축	2020
적도기니	(수지) 구조적수지적자 ≤ GDP 1.5%	2017
가봉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5%	2017
조지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채무 ≤ GDP 60%	2013
그레나다	(수지) 기초재정수지 적자 ≤ GDP 3.5% (채무) 정부채무 ≤ GDP 55%	2015
기니비사우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홍콩	(수지) 균형재정 달성, 재정적자 방지	1997
인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중앙정부채무 ≤ GDP 40%	2018
인도네시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일반정부채무 ≤ GDP 60%	67/04
이란	(채무) 공공채무 ≤ GDP 40%	2016
자메이카	(수지) 기초재정수지 적자 ≤ GDP 7.0%	2017
카자흐스탄	(수지) 2018년부터 재정적자 ≤ GDP 1.0% (채무) 정부채무 ≤ GDP 27%	2016
케냐	(채무) 정부채무 ≤ GDP 50%	2019
코소보	(수지) 재정적자 ≤ GDP 2.0%	2015
라이베리아	(채무) 공공채무 ≤ GDP 60%	2009
말레이시아	(채무) 2022년까지 정부채무 ≤ GDP 65%	2020
몰디브	(수지) 재정적자 ≤ GDP 3.5% (채무) 정부채무 ≤ GDP 60%	2013
말리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몰타	(채무) 정부채무 ≤ GDP 60%	2014
모리셔스	(채무) 2025년까지 정부채무 ≤ GDP 80%, 2030년까지 정부채무 ≤ GDP 70%	2020
몽골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2% (채무) 정부채무 ≤ GDP 40%	2021
몬테네그로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 GDP 3% (채무) 일반정부채무 ≤ GDP 60%	2014
나미비아	(채무) 정부채무 ≤ GDP 35%	2001
니제르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나이지리아	(수지) 재정적자 ≤ GDP 3.0%	2007
파키스탄	(수지) 연방 재정적자 ≤ GDP 3.5%	2016
파나마	(수지) 2022년에 재정적자 ≤ GDP 4.0% 2024에 재정적자 ≤ GDP 2.0%	2020
파라과이	(수지) 중앙정부 재정적자 ≤ GDP 1.5%, 3년 평균 재정적자 ≤ GDP 1.0%	2015
페루	(수지) 구조적수지 적자 ≤ GDP 1%	2013
루마니아	(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 GDP 1.0% (채무) 일반정부 채무 ≤ GDP 60.0%	2013
러시아	(수지) 기준 유가(\$40)에서 재정수지 균형	2019
르완다	(수지) 중앙 정부 재정적자 5년 평균 ≤ GDP 5.5%	2019
세네갈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세르비아	(채무) 일반정부채무 ≤ GDP 45%	2011
싱가포르	(수지) 정부 임기 동안 예산 균형	1995
남수단	(수지) 재정적자 ≤ GDP 3.0% (채무) 공공채무 ≤ GDP 50.0%	2013
스리랑카	(수지) 다년도 기준 재정적자 목표치 설정	2013
세인트키츠네비스	(채무) 2035년까지 채무 ≤ GDP 60.0%	2021
세인트루시아	(채무) 2035년까지 채무 ≤ GDP 60.0%	202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출) 정부 임금 및 총 지출의 GDP대비 비중 설정	2022
탄자니아	(지출) 정부 지출 ≤ GDP 40.0%,	2015
태국	(채무) 공공채무 ≤ GDP 70.0%	2018
동티모르	(수입) 예산 목적 석유기금 인출 ≤ 3.0%	2005
토고	(수지) 재정적자 ≤ GDP 3% (채무) 공공채무 ≤ GDP 70%	2015
투르크메니스탄	(수지) 중앙정부 균형수지	2015
우간다	(수지) 재정적자 ≤ GDP 3.0%	2016
우루과이	(지출) 중앙 정부 및 사회보장 지출 실질 증가율 ≤ 추정 잠재 성장률	2020
베트남	(수지) 2021~2025 평균재정수지적자 ≤ GDP 3.7%	2021